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37

발의연월일: 2020. 11. 6.

발 의 자: 민형배·강은미·김민철

김철민 · 도종환 · 소병훈

이정문・정춘숙・주철현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자 재산등록 토지, 주택 등 부동산 가액 산정시, 개별 공시지가·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한편,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재산등록 대상이 아닙니다.

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.

이에 부동산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·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.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려 합니다. 공직자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(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 또는 실거 래가격"을 "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와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"을 "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"을 "합계액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"으로 한다.

타.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(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재산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제3호타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생 략)	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	2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동산·증권·채	3
권·채무 및 지식재산권(知識	
財産權)	
가. ~ 카. (생 략)	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타.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
	이상의 암호화폐(교환의
	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
	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
	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
	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
	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
	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것을 말한다)
4. • 5. (생 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	③
의 종류별 가액(價額)의 산정방	
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	
다.	<u>.</u>
1. 토지는 「부동산 가격공시에	1

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개별공시</u> 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 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 다) 또는 실거래가격

- 2. 주택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<u>공시가격</u> 또는 실거래가격
- 3. 상가·빌딩·오피스텔,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「부동산 가 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 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(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)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

4. ~ 14. (생 략)

④ ~ ⑦ (생 략)

	<u>개별공</u>
	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
	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
	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
	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
	다)와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
2.	
	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
3.	
	<u>합계액</u>
	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
4.	~ 14. (현행과 같음)
4) ~ ⑦ (현행과 같음)